##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8056

발의연월일: 2022. 11. 2.

발 의 자:김기현・이인선・윤두현

김학용 • 이주환 • 강기윤

배현진 · 김용판 · 권명호

서범수・구자근・황보승희

홍문표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는 행정안 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의무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번 이태원 핼로윈 축제와 같이 주최·주관자나 단체가 없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축제나 행사의 경우에는 정부와 지자체 등의 안전관리 대책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또다시 제2, 제3의 이태원 사고가 재발될 가능성이 큰 상황임.

이에 주최·주관자 및 단체가 없는 지역축제 및 행사 등에 관한 안전관리조치 의무화 조항을 신설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추진되는 지역축제 및 행사의 경우에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안전관리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으로써 각종 안전사고로부

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13 신설).

#### 법률 제 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6조의13(주최·주관자 및 단체가 없는 지역축제 및 행사 등에 관한 안전관리조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최·주관자 및 단체가 없는 지역축제 및 행사 등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 1항에 따른 주최·주관자 및 단체가 없는 지역축제 및 행사 등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지도·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 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 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최·주관자 및 단체가 없는 지역축제 및 행사 등에 관해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수립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6조의13(주최·주관자 및 단
	체가 없는 지역축제 및 행사
	등에 관한 안전관리조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주최・주관자
	또는 단체가 없는 지역축제 및
	행사 등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 관할 시장・군수・구청
	장은 제1항에 따른 주최·주관
	자 및 단체가 없는 지역축제
	및 행사 등에 대해 안전관리계
	획의 이행 실태를 지도·점검
	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최·주관자 및 단체가 없는 지역축제 및 행사 등에 관해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수 립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